

이민사회기본법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52
----------	-------

발의연월일 : 2024. 04. 25.

발 의 자 : 이자스민·양경규·강은미
심상정·강민정·김민석
배진교·장혜영·도종환
김영주·하태경·한정애
인재근 의원(13인)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및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민사회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며, 이주배경시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인류 공동의 번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민사회 및 이주배경시민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이주배경시민청장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주배경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이주배경시민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이주배경시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배경시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이주배경시민위원회는 이민사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시행계획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이주배경시민청이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국민과 이주배경시민에게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정보를 생산·보급하며, 국민·이주배경시민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이민사회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자스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민사회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민사회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며, 이주배경 시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인류 공동의 번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민사회”란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로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문화, 언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각각의 문화를 함께 계승·발전시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2. “이주배경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다.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인

라. 「난민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바.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그 자녀

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과
같은 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다
만,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제외한다.

차.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및 그 외
국인이 입국하여 출산한 19세 이하의 자녀

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

3. “이민사회정책”이란 이주배경시민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
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여
이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시민이 정책당사자로서 이민사회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시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다양성 존중, 평등한 권리 보장, 인권옹호,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민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이주배경시민청장은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민사회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이민사회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이민사회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이주배경시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이주배경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이주배경시민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주배경시민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주배경시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이주배경시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주배경시민청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단에 따라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이주배경시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민사회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행계획과 관련된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주배경시민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이민사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주배경시민위원회)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 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장 제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정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이민사회정책 전문가
2. 이민사회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이주배경시민청장이 된다.

④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이민사회정책 조사·연구 등) ① 이주배경시민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2.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3. 그 밖에 이민사회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이주배경시민청은 국민과 이주배경시민에게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정보를 생산·보급하고, 국민·이주배경시민이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주배경시민청은 제2항에 따른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이민사회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이주배경시민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이민사회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활용 중인 정보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주배경시민청은 효율적인 조사·연구 및 이민사회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이민사회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홍보 등) 이주배경시민청은 이민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민사회정책에 관한 교육·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